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77
----------	------------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1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상위법의 개념과 달라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청소년은 학생으로 수정함.

II.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 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일괄 수정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 중 “청소년”을 “학생”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청소년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도박 피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피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